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28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 강유정·박 정·김영배

김준혁 • 위성곤 • 어기구

김한규 · 임광현 · 백승아

임오경 · 이훈기 · 황정아

한병도 • 전진숙 • 이기헌

권칠승 • 박희승 • 서영교

조계원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체육도장업 등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관리·감독의 사각지 대에 놓여있음.

이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 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호,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인공암벽장업"을 "인공암벽장업, 요가업, 필라테스업"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이용료(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3개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받는 대가로서 미리 지불한 이용료를 말한다)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제8호 중 "제26조에"를 "제26조제1항에"로, "보험에"를 "보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에"를 "제26조제1항에"로, "보험에"를 "보 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가업 또는 필라테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가업 또는 필라테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 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 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 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 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 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인공암벽장업, 요가업, 필라테스업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보험 가입) (생 략) 제26조(보험 가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이용료(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3개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 설을 이용한 교습을 받는 대가 로서 미리 지불한 이용료를 말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 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 1. ~ 7. (생략)
- 8. <u>제26조에</u> 따른 <u>보험에</u> 가입 하지 아니한 때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 략)
 - 4. <u>제26조에</u> 따른 <u>보험에</u> 가입 하지 아니한 자

한다)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의 재산
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
<u> 여야 한다.</u>
 제30조(시정명령)
1. ~ 7. (현행과 같음)
8. <u>제26조제1항에</u> <u>보험 또</u>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
증보험에
제40조(과태료) ①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6조제1항에</u> <u>보험 또</u>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